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쟁의 및 분석

- 리샤오후(李小虎)¹⁾

논문 개요: 중일 동중국해 해양 권익 논쟁은 실질적으로 해역 주권과 해저 자원의 분배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며 그 중점은 대륙붕 경계획정이다. 중국은 형평원칙과 자연적 연장의 원칙을 주 골자로 하는 경계획정을 주장하고 일본은 중간선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하 협약) 및 국제관습법의 틀을 차용하여 형평원칙과 자연적 연장원칙을 적용한 경계획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분석해 보겠다.

- 1.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 생성의 배경 및 연안국간 견해차
- ① 동중국해 해역에서 발견된 석유자원으로 인한 중일 해양 권익 논쟁

동중국해는 중국 동해안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다. 서쪽으로는 중국이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의 규슈, 류큐 열도와 맞닿아 있으며 북으로는 황해(한국명 서해)와 한 국의 제주도, 남쪽으로는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와 통한다. 총 면적은 75만Km이다. 동중국해 해저 3분의 2에 달하는 면적이 대륙붕이고 수심은 200m를 넘는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 육지 영토에서 자연적으로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된다. 지질학적으로 오키나와 해구의 깊이는 2940m인데 이는 중국 대륙 영토의 자연적 연장과 일본 류큐 군도의 도붕사이의 천연 분계선이다. 1967년 일본은 동해대학의 히로시(新野弘) 교수와 미국의 우즈 홀(Woods Hole)해양연구소의 교수의 연구에 따라 동중국해는 세계의 석유 매장량이 가장 높은 해저 지역 중 하나라고 밝혔다. 1968년 '아시아 근해지역 광물자 원 공동탐사 협의 위원회 기술 보고서'에는 중국, 타이완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 계에서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밝혔다. 대략 60억에서 70억 톤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는 흑해에 매장된 유전에 상당 하며 제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라고 밝혔다. 일본의 보고에 따르면 석유의 대부분은 동중국해 중간선 일본 쪽에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히로시 교수의 건의에 따라 일본은 먼저 1968년 5월 20일 '오키나와 문제 등 전문위원 좌담회'를 열었고 다카오카 다이 스케(高冈大辅)의 주도로 만들어진 44명의 '센가쿠열도2'시찰단'은 조사를 위해 댜

¹⁾ 간쑤성정법대학

오위다오로 향했다. 1969년 6월 14일 ~ 7월 13일, 1970년 6월 4일 ~ 20일 '센가쿠 열 도 주변 해역, 해저학술조사단'의 두 번의 탐사에는 약 1억 엔이 들었고 탐사 구역은 8000해리에 달했다. 1974년 1월 30일 일본은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한・일 동해 대 륙붕 공동개발협정(한국명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고 동해 해안 약 8만 Km에 달하는 구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정하고 비용공동분담, 자원공동분배 원칙을 세 웠다. 개발구역은 일본과 한국이 가정한 중간선의 일본 쪽에 위치하여 있었다. 해당 구 역의 서부는 이미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까지 깊이 들어와 있었다. 이 협정에 대해 중국은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댜오위다오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국도 70년대부터 시작하여 동중 국해 오일가스 자원 탐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저장성에서는 동중국해 해역의 대륙붕 분지에서 '시후(西湖)분지'라고 불리는 대형 유전을 발견하였다. 1980년부터 동중국 해에서 처음으로 룽징 1호(용정 1호, 龙井一号)의 시추가 성공한 후 중국은 시후분지에 서 30여 개의 광구를 개발하였고 그 중 20개 광구에서 산업용 오일가스 획득에 성공하 였다. 20여 년간의 탐사에서 중국은 핑후(平湖), 춘샤오(春晓), 티엔와이티엔(天外天), 돤 치아오(断桥), 찬슈에(残雪), 바오윈팅(宝云亭), 우윈팅(武云亭), 콩췌팅(孔雀亭)등의 오일 가스전(田)을 개발해 내었다. 1998년부터 시작하여 일본이 정한 동해 중간선은 중국 측 이 개발한 춘샤오, 티엔와이티엔, 돤치아오, 찬슈에 이 네 곳의 오일 가스전에 가까웠 으며 면적은 대략 2.2Km였다. 춘샤오 유전은 올해(당시 2006년) 10월 공식적으로 시굴 에 들어가며 해저 파이프는 오일가스 자원을 350Km 밖의 저장성 닝보시까지 운송한 다.

중국의 해상 오일가스 탐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일본도 이와 같은 행동을 경쟁하듯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2003년 8월 25일 '대륙붕 기본 구상 획정'을 제정하였다. 그 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00억 엔을 들여 준비해 2009년 정식으로 국제연합 대륙붕위원회로 일본 대륙붕에 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였다. 2003년 11월 일본 정부는 일본 석유광산연합, 일본 석유개발공사, 일본 철강연합, 일본 토목공업 협의회 등 10개 해양개발관련 단체와 일본 대륙붕조사회사를 설립하였다. 2005년까지 중국의 티엔와이티엔, 춘샤오 등의 유전 생산 시기가 다가오자 일본 국내 언론은 동중국해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중국이 경계선을 넘어 개발을 한다고 비난하였다. 그중 경제산업상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는 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끊임없이 중국을 비난하였다.

②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쟁의에서의 중·일 양국의 주장과 이견

분쟁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중일 양국은 세 차례에 걸쳐 동해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양측은 모두 각자의 견해를 고

²⁾ 일본측 연구단 이름 그대로 사용함.

수하여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중국해 경계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양측이 주장하는 경계획정 원칙은 서로 다르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등거리 원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륙붕이 맞물려 있는 국 가는 협상을 통해 경계획정을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간선 원칙에 따르도 록 한 국제연합 해양법협약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오래 지속되어왔다.

중국은 자연적 연장과 형평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해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중간선은 하나의 방법일 뿐 형평원칙에 부합할 때만 받아들여질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중국과 일본이 같은 대륙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중국은 해당해역 지질 구조와 지형적측면에서 동중국해 육지가 오키나와 해구와 중국의 대륙붕과는 별개의 구조라고 보고 있다.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르면 대륙붕의 외연은 2500m의 등심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중국해 대륙붕은 광대하고 동쪽으로 완만하게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 여기서 수심 2500m의 단층이 이를 막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같은 대륙붕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중일 양국은 공통된 대륙붕을 가지고 있고 그 동쪽 면의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이 10000m에 달하며 그 외연은 서북 태평양에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오키나와 해구는 사실 그 대륙붕이움푹 들어간 곳일 뿐이며 대륙붕의 단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마리아나 해구가 대륙붕의 단절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은 중국과 공통된 대륙붕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적 연장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대륙붕의 경계획정의 기점이다. 일본은 단조(男女)군도와 도리시마 섬(鸟岛) 그리고 댜오위다오를 기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3)하고 있으며 중국의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유지하고 있다. 댜오위다오를 경계획정의 기점으로 하면 오키나와 해구를 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은 중간선으로 동중국해 경계를 획정하여 200 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고자 할 것이다. 앞의 두 섬은 사람이 없고 일본 쪽에 가깝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협약 제121조 24)항에 따라 인간이 거주를 유지하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은 경계획정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점이경계획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여기고 있다. 게다가 댜오위다오는 타이완의 부속 도서로 오래 전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였기에 경계획정의 기점은 더더욱 될 수 없다.

³⁾ 이중배 일본이 조사한 대륙붕 및 대만 지역 정치상황이 댜오위댜오 주권에 미치는 영향 http, / / www. case. net. cn/ chinese/ 830 _ rbs/files/ xuekan/ 2003—6/ lizhongbang. htm,2005—10- 25. 4) 본문에는 2항이라 되어 있지만 관련 규정은 3항임. 저자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 제 121 조 섬·제도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2. 분쟁의 분석 및 해결 방법

동중국해의 가장 넓은 곳의 폭은 360해리에 불과해 협약 제57조에 의해 양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게 된다. 대륙붕의 경우 대륙붕의 자연연장 원칙이든 등거리선(등거리선) 원칙이든 모두 법적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경계획정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배타적 경제 수역을 따라야 하는가 대륙붕 경계획정을 따라야 하는가?

동중국해 경계획정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각기 다른 성질의 해역 경계획 정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1982년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은 처음으로 보편성을 가진 국제 협약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을 확립하였고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이 대륙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되었다. 협약은 연해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을 영해기선 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해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육지 영토의 완전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이때 영해기선에서 대륙변 외연까지의 거리가 200해리 미만이면 200해리 까지, 200해리를 넘으면 350해리까지 혹은 등심선 2500m가 넘지 않는 100해리까지 확 장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이 법률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거친 후 선고해 야 성립이 된다. 하지만 연안국의 대륙붕 권리는 고유한 것이라 국내법 절차가 필요하 지 않다. 여기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다른 경계선이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 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관행에서 양자는 '같은 경계선'과 '다른 경계 선'이라는 다른 견해를 가지는데 각기 다른 국가들의 경계획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응용된다. 메인만 사례와 1985년 기니-기니비사우 사례에서처럼 국제사법 재판소는 하 나의 경계선으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누었다. 1978년 호주-파퓨아뉴기니 토 러스 해협의 경계획정 사례와 1997년 호주-인도네시아 경계획정안에서는 두 개의 선으 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누었다5).

동중국해 경계획정은 양자 법률제도의 쟁의라고도 볼 수 있다. 동중국해의 대부분 해역의 동서 너비는 400해리가 되지 않아서 중일 양국이 주장하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서로 중첩된다. 동중국해 경계획정과 유사한 사례는 1978년 호주-파퓨아뉴기니 토러스 해협 경계획정안과 1997년 호주-인도네시아 경계획정이다. 넓은 대륙붕을 가진 국가와 군도 국가의 경계획정안이고 해당 해협 폭도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 두사안 모두 넓은 대륙붕을 가진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였다.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

⁵⁾ 쫑구지에(東古洁). 배타적경제수역경계획정문제 연구—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경계획정의 관계 [J] . 중산대학학보, 1998(4) .

칙은 넓은 대륙붕을 가진 국가인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협약의 경계획정원칙에 근거하여 관련 국제법과 중재안을 참고하여 중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다른 경계선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② 형평원칙과 자연적 연장원칙을 적용하느냐 등거리선을 적용하느냐에 관한 문제

인접한 국가나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해양경계획정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 사이에 항상 이견이 있었다. 쟁의의 주요 초점은 경계획정의 원칙과 기준이다. 협약 제정 당시에도 두 개의 대립하는 진영이 있었는데 하나는 중국을 포함한 50여개 국가로 이루어진 형평원칙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형평 원칙에 따라 협의를 통해 대륙붕 경계를 긋고 일체의 상황을 고려하고 중간선을 적절히 사용하여 경계획정을 하자는 주장이었다. 다른 한쪽은 중간선 원칙을 경계획정의 유일한 합리적인 원칙이라고 지지하는 30여개 국가의 입장이었다.

결국 "해안이 서로 향하거나 인접 국가 간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에 명시된 국제법에 기초하여 공평하게 해결되도록 합의해야 한다"는 기존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1항에 합의했다. 이 문건은 중간선이나 등거리선을 사용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그 경계가 형평을 이루도록 해결돼야 한다고 규정해 기본적으로형평 원칙을 주장하는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켰고 또 다른 한편으로 형평원칙을 규정하지 않아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 원칙을 주장하는 국가의 요구에도 부합했다. 이 조항이대륙붕 경계획정의 평화적이고 공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도 너무 포괄적이고모호하여 엄격한 기준이 없어 이를 실천에 옮길 때 협상 당사자들이 과도한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심지어 대립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실제 경계획정은국제관습법과 관련국들의 구체적인 관행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동중국해 경계획정에 적용해 본다면 일본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여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법률에 대해 하나씩 분석해 보자면 우선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1958년의 대륙법 협약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이 협약에 조인하지 않았다. 이 협약은 관련 국가의 협의를 통해 대륙붕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거리 중간선을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은 단순히 중간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형평을 이루기 위해 등거리와 특수사정원칙을 결합해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튀지지-리비아 경계획정안에서 형평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거리 원칙은 강제성을 가진 국제 관습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념은 리비아-몰타 경계획정안, 기니-기니비사우 경계획정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키나와 해구와 동중국해 해안선의 지질・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선을 정하는 것을 형평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대륙붕 협약의 정신에도 위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1974년의 '한일 동중국해 대륙붕 공동개발협정(한국명 한일대륙붕협정)'

은 일본과 한국 당국이 동중국해의 공동개발을 위해 중국을 제외하고 맺은 협정이다. 개발지역은 한국과 일본이 가정하여 설정한 중간선의 일본측 해역이며 그 서쪽 부분은 중국 동중국해 대륙붕의 중부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원칙에 따라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과 관련된 국가가 협상을 통하여 어떻게 획정을 할지 정해야 하는 바, 현재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중국을 제외하고 동중국해 대륙붕을 소위 '한일 개발구역'으로 정하였다. 이는 중국의 주권을침해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동의할 수 없으며 만일 일본정부와 한국이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개발활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 벌어질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약의 제3국 동의 없이 의무나 권리를 만들 수 없다는비엔나 협약 제34조에 부합하지 않는 한일 공동 개발구역 협정은 중국에 대해 효력이발생하지 않으며, 현재의 동해 대륙붕에 적용되는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언급할 필요도 없다.

세 번째로 1996년 공포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에는 해안과 맞닿아 있는 국가 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선을 200해리로 하고 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국가 간 주장이 중첩되는 경우 서로 합의해 선을 긋거나 등거리중간선을 원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약을 발표한 뒤에 "국내법 효력보다 국제법 효력이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넷째, 협약은 '등거리 중간선'을 확실히 명시하지 않았다. 국제관습법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북해 대륙붕 사건, 메인만 경계획정안에서 등거리 방법의 이론적 기반과법적 지위를 상세히 논술했다. 법원은 등거리 방법의 간편성이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강제적 법률로 규정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실제 표시와 관계없이 등거리 원칙을 강제로 지리·지질적 환경에 적용하려 하게 되면 형평한 결과를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등거리 원칙의 선결조건에 따라 합의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거리 원칙이 다소 우월하다. 여기서 등거리·중간선 원칙은 경계를 긋는 방법일 뿐경계획정의 원칙으로 확립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중국해 경계획정에서는 해안선, 대륙붕의 연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선으로 경계획정을 하면 형평원칙에 위배된다.

중국은 형평원칙과 자연적 연장 원칙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제2조에는 "중국의 대륙붕은 중국 영해 이외의 중국육지의 완전한 자연적 연장에 따라…중국과 해안선이 인접한 국가 혹은 마주보고 있는 국가와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이 중첩되면 국제법에 기초하여 형평원칙에 따라 협의해 경계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평원칙은 국제사법, 국제중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관련 국가의 관행에서도 공인된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이다. 1969년 북해 대륙붕 경계획정안에서 국제사법재판 소는 경계획정은 협의를 통해 형평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며 또한 관련 사정을 고려해 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후의 경계획정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84년 메인만 사건, 1985년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안, 리비아-몰타 경계획정안 등의 중재안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원칙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실제 사례는 형평원칙이 대륙붕경계획정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중국해 경계획정안에서도 형평원칙을 주요한 원칙으로하여 경계획정을 해야 한다. 기타 다른 원칙이나 방법은 형평원칙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자연적 연장원칙도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 중 하나이다. 중국의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대륙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고 중국과 일본은 공통된 대륙붕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즉 오키나와 해구는 동중국해 경계획정에서 자연적인 분계선이 된다. 해구 양측 지질구조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해구의 동쪽 면은 활모양의 류큐 군도로 지각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오키나와 해구는 지질, 지형, 지리의 구조상으로 동중국해 대륙붕, 대륙붕의 사면과 현저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자연적 연장의 원칙을 확립하였고 해양법 협약에는 자연적 연장의 원칙과 등거리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후의 메인만 사건에서 해안선의 방향과 길이 등의 지리적 요소를 더 강조하였고 자연적 연장원칙의 관련 지질과 지형요소는 중요시되지 않아 그 원칙적인 지위는 약화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연적 연장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의 관련 분쟁국가는 공통된 대륙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중국해 사례와는 완전히 다르다.

③ 댜오위다오와 기타 부속도서가 동중국해에 경계획정에서 어떻게 효력을 가지는가

그 외에도 해양경계획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관련된 섬의 효력이다. 각국이 조인 한 대륙붕 협약에는 경계획정 중 섬에 부여하는 효력은 대략 세 가지의 상황으로 귀결 된다.

하나는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섬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분 효력을 부여하는 것, 세 번째는 어떤 효력도 부여하지 않고 영해만 부여하는 것이다. 대부분 세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해안선과 가까운 섬은 대부분 경계획정의 기점으로 고려되곤 한다. 그래서 일본은 댜오위다오와 단조(男女)군도, 도리시마(鸟岛) 섬을 기점으로 경계획정을 하길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섬은 일본 해안에 붙어 있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기점이 될 수 없다. 댜오위다오 열도(일본명 센가쿠열도)는 8개의 크기가 다른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댜오위다오가 제일 면적이 크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협약 제121조에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댜오위다오는 면적도 작고 자원도 작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또한 중간선 부근의 주권분쟁이 있는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

3. 현실적 고찰과 해결 전망

범지구적 자원 부족 현상, 이권 충돌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인 문제, 민간 신뢰 부족,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문제임을 감안하면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여러 부분에서 준비를 잘 하여야 한다.

우선 주권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다오위다오, 동중국해 대륙붕의 귀속은 중국의 해역의 경계를 나누는 문제와 귀결되어 있다. 실제 협상에서 중국은 해당 영역에 대한 주권을 잠시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주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은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여러 나라와 분쟁 중에 있다. 만일 일본의중간선 원칙을 수용하여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앞으로 이와 같은 분쟁이 있는 국가들에게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 이는 주권 문제에서 중국이 양보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전략안보상 춘샤오 오일가스전을 내준다면 바다로 향하는 동중국해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 된다.

둘째, 해양 탐사와 해상 자원 채굴에 속도를 높혀야 한다. 해양 탐사 자료는 국가 해양의 권익을 보장하며 해양 경계획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양탐사자료는 해상경계획정, 국가해양권익 수호, 외교협상 등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근거이자 증거이다. 해양탐사와 함께 상세한 해양지리 자료를 수집하고 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경계획정 정보를 결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여러 경계획정안을 도출해내고 각 방안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분석하여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 분쟁 해역을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상대 국가의 정보와 중국의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상, 군사적인 수단, 법률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협상으로 동중국해 쟁의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군사력과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다른 국가들과 군사적인 해양 집행 능력을 길러 관할 해역의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법리적인시각에서 역사를 분석하고 '시제법6'으로 사실을 고찰하여 협약, 국제법 관행의 기초 위에 국제해양법으로 중국의 해양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⁶⁾ 법률상호간의 시간적인 저촉을 해결하는 법. 신규입법과 기존의 법의 개폐에 의해 동일의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적용관계를 결정하는 법